

의안번호	2213349
의 퇴 인	진성준의원
회 답 일	2025.10.24.
추계번호	25E5374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15세 이하 자녀 및 태아에 대한 보험료 세액공제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59조의4제1항 (특별세액공제)	○ 15세 이하 자녀 및 태아에 대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－ (현행) 근로소득자가 납입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에 대해 일정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1.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보험료 납입금액(연 100만원 한도)의 15%를 산출세액에서 공제 2.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하는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보험료 납입금액(연 100만원 한도)의 12%를 산출세액에서 공제 － (개정안) 현행에 추가하여 기본공제대상자 중 15세 이하 자녀 및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 납입금액(연 100만원 한도)의 12%를 산출세액에서 공제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9조의4제1항 (특별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15세 이하 자녀 및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 납입금액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의 별도 한도로 세액공제를 신설함에 따라 소득세 수의 감소가 예상됨
- 이에 대한 세수변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15세 이하 자녀 또는 태아에 대한 보장성보험료를 납입하는 가구 수, 이들의 연간 보험료 납입액,

현행 보험료 세액공제 신청 내역 등에 대한 상세자료 필요

- 현행 보험료 세액공제 제도는 자동차 보험료 및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보장성보험료 납입액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
- 따라서 15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장성보험료에 별도의 한도를 부여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데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추정하려면, 기본공제대상자인 부모·배우자·자녀연령별 보험료 납입액, 자동차 보험료 납입액 등 보장성보험료 납입 내역과 최종 보험료 세액공제금액 등의 자료 필요
- 연간 태아보험 가입자 수 및 평균 보험료 납입금액 등의 자료도 필요

□ 그러나, 15세 이하 자녀 또는 태아에 대한 보장성보험료를 납입하는 가구 수 및 이들의 연간 보험료 납입액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고,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자료에 의한 객관적인 추계 곤란

□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입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박지원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지원	02-6788-4662	jwpark1209@assembly.go.kr